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09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이성윤 · 서삼석 · 손명수  
민형배 · 김 윤 · 윤준병  
서영석 · 이정문 · 김 현  
최민희 · 조정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경찰·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전단 중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을 “경찰·소방·교정공무원으로 30년”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을 “경찰·소방·교정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p> <p>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4. 국립호국원</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u>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p> <p>5. (생략)</p> <p>② ~ ⑦ (생략)</p>	<p>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p> <p>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다.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라. <u>경찰·소방·교정공무원으로 30년 -----</u> -----<u>경찰</u> <u>·소방·교정공무원</u>----- -----.</p> <p>5.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